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·관리규정



[시행 2025. 3. 4.] [조달청고시 제2025-9호, 2025. 3. 4., 일부개정]

조달청(국제협력담당관), 070-4056-6492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하는 국내 기업(이하 "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(G-PASS기업)"이라 한다)의 지정 •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거점국가. 기관" 이란 조달청에서 G-PASS기업에 각종 정보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대상이 되는 국가 또는 기관을 말한다.
- 2. "수요기관"이란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www.q2b.qo.kr, 이하 "나라장터"라 한다)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.
- 3. "중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.
- 4. "중견기업"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.
- 5. "벤처창업조달기업"이란「벤처나라 등록 물품·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」제2조제4호의 벤처창업기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.
- 6. "정부조달문화상품" 이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통문화상품으로 등재된 물품을 말한다.
- 7. 삭제
- 8. 삭제
- 9. 삭제
- 10. "혁신제품기업"이란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의한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.
- 11. "지정"이란 조달청장이 G-PASS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신규지정과 재지정을 모두 말한다.

제2장 G-PASS기업 지정

제3조(지정대상) G-PASS기업 지정대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www.g2b.go.kr)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견·중소기업으로 한다.

제4조(지정신청) ① 조달청장은 G-PASS기업 지정을 하려는 경우 공고를 하여야 한다.

② G-PASS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(이하 "신청기업"이라 한다)은 <별표2>의 제출서류와 <별지 제1호 서식>의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5조(지정제외)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기업을 G-PASS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- 1. 신청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
- 2. 부도,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
- 3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
- 4.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
- 5. 그 밖에 G-PASS기업 지정 및 재지정이 곤란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심사절차) 지정심사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, 진출 의지 및 가능성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G-PASS기업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한다.

제7조(1차 심사) ① 조달청장은 1차 심사를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- ② 심사위원은 1명 이상의 내부 심사위원(국제협력담당관 또는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)과 2명 이상의 외부심사위원으로 한다. 이 때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은 제10조의3에 따른다.
- ③ 삭제
- ④ 심사위원은 신청서류와 현장실태조사서를 <별지 제1호의 1서식>에 따라 심사한다. 다만, 각 심사항목의 심사 기준일은 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 한다.
-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기업을 2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.
- 1.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총점의 산술평균이 60점 이상일 것
- 2. 비계량 항목에서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
- ⑥ 삭제
- ⑦ 조달청장은 지정 신청기업에 대해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<별지 제2호의 2서식>의 현장실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. 다만, 신규지정을 신청한 기업 중 신청 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현장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제8조(2차 심사) 계약심사협의회는 심사대상의 1차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G-PASS기업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
제9조(지정증서 및 등급화) ① 조달청장은 G-PASS기업에게 <별지 제1호의 4서식>의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- ② 조달청장은 G-PASS기업 지정 시 [별표 3]에 따른 등급을 부여·관리한다.
- ③ 삭제
- ④ 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이 부여된 연도의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최초로 부여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 부여된 해의 다음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1. 삭제
- 2. 삭제
- ⑤ G-PASS기업은 수시로 등급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조정신청에 따른 갱신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이 때 실적인정기간은 조정신청 전 정기등급 평가 당시 실적인정기간으로 한다.

- ⑥ 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 등급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0조(지정기간) ①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출실적, 해외조달시장 진출사업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재지정 절차 등은 제10조의2에 따른다.
 - ③ 삭제
 - ④ 삭제
 - ⑤ 삭제
 - ⑥ 삭제
- 제10조의2(재지정) ① G-PASS기업으로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정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만료일전까지 <별지 제2호 서식>의 신청서를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재지정 절차 및 단계별 심사에 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7조제4항, 제8조를 따른다. 다만, 재지정 시 1차 심사는 <별지 제2호의 1서식>에 따라 심사한다.
 - ③ 1차 심사 시 심사위원이 부여한 총점의 산술평균이 60점 이상인 기업을 2차 심사대상으로 한다.
 - ④ 재지정 신청 기업의 현장실태조사는 직전 지정기간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만 실시한다.
 - 1. 삭제
 - 2. 삭제
 - 3. 주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
 - 4. 직전 지정기간 동안 수출건이 없는 경우
 -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 - 1.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
 - ⑥ 재지정 탈락 기업은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- 제10조의3(외부 심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) G-PASS기업 지정심사 및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의 모집·선발·자격,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은 「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」(이하 "통합관리규정"이라 한다)을 따른다
- 제10조의4(외부 심사위원의 회피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평가회의 개최 전에 평가회의 신청하여야 한다.
 - 1.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
 - 2.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
 - 3.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
 - 4. 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

- 5.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회의 구성에서 제척하고 그 사실을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

제3장 지원

제11조(지원사업) 조달청장은 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

- 1.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및 수출컨소시엄 파견 등 신규시장 진출
- 2. 해외 공공입찰 및 계약 관련 정보 수집 제공
- 3. 해외 조달제도 및 주요 공공 기관에 납품하는 현지 기업의 정보 수집 제공
- 4. 해외 발주처 및 주요 바이어 초청 상담회, 설명회 개최
- 5. 통·번역 지원, 카탈로그 제작 등 해외 마케팅 지원
- 6. 해외조달 및 수출관련 세미나, 수출실무강의 등 교육지원
- 7.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등
- 8. 그 밖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- 제12조(모집공고 및 신청) ① 조달청장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하여 '해외조달정 보센터', '나라장터' 등에 공고할 수 있다.
 - ②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심사 및 선정) ① 조달청장은 지원사업의 참가기업 선정을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 - ② 심사위원은 국제협력담당관을 포함한 5급 이상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다. 이 때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은 제10조의3에 따른다.
 - ③ 심사의 상세 기준, 절차,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은 사업공고의 내용에 따른다. 다만, 신청기업 수가 모집기업수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④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.
 - 1. 해외전시회 사업 신청기업이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동일한 해외 전시회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
 - 2. 해외전시회 사업 신청기업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4년 연속으로 조달청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받은 경우
 - 3. 해외전시회 사업 신청기업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조달청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기업으로 선정 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경우
 - 4. 그 밖에 선정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제14조(지원사업 수행대행) ① 조달청장은 해외수출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.
 - ② 조달청장은 사업수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해외전시회,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, 수출컨소시엄 및 수출상담회 관리 및 운영
- 2. G-PASS기업 지정 현장실태 조사업무,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사업 등
- 3. 해외 현지 시장조사 및 홍보
- 4. G-PASS기업의 중간점검, 등급화 등 사후관리
- 5. 그 밖에 해외수출 지원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- ③ 조달청장은 지원사업수행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사후관리

- 제15조(교육) ① G-PASS기업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한다.
 - 1. G-PASS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지정 직전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
 - 2. G-PASS기업 지정 이후 C등급을 받은 기업
 - ② 제 1항의 이수대상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 관련 교육 및 설명회로 제한한다.
 - 1. 조달청
 - 2.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
 - 3. 사단법인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
 - 4. 한국무역협회(KITA)
 - 5. 한국국제협력단(KOICA)
 - 6. 지방자치단체
 - 7. 그밖의 해외조달시장 수출 관련 교육 등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
 - ③ 제1항 단서 각 호의 기업들은 교육사유가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제2항의 교육・설명회를 2회 이상 이수하고 해당 교육에 대한 증빙(수료증 사본 등)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조달청장은 교육 대상 기업이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조달청 주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
 - ⑤ 조달청장은 신청기업이 제2항의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 관련 교육에 참가한 경우 G-PASS기업 지정 심사시 우대할 수 있다.
 - ⑥ 제5항의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 심사 신청 시 이수한 교육에 대한 증빙(수료증 사본 등)을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지정 취소)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G-PASS기업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- 2. 그 밖에 G-PASS기업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G-PASS기업은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조달청장은 지정 취소건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자료수집 등) G-PASS기업은 조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지정 직전 3개년과 지정 유지기간 동안의 월별 수출실적
- 2. 기업의 대표자, 수출담당직원 등의 기본 및 변경사항
- 3. 그 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요구자료

제18조(수당 등 지급) 조달청장은 지정심사 등에 참석한 외부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수 있다.

제19조(상표) ① G-PASS기업은 <별지 제1호의 5서식>의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.

- ② 지정마크는 해당 기업의 제품(용기, 포장을 포함한다) 및 홍보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C등급을 받은 기업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한정해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삭제

제20조(비밀유지) 해외조달시장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조달청 공무원 및 지원관
- 2. 외부 심사위원
- 3. 지원사업 수행대행자

제21조(재검토 기한) 조달청장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5-9호,2025.3.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